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6. 1. 4(월) 이만재의원외 2
- 나. 회부일자 : 2006. 3. 29(수)
- 다. 상정일자 : 2006. 3. 30(목) 제127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6. 3. 29) 상정·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이만재 의원)

가. 제안이유

-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연2회를 합하며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소집됨에 따라 예산의결일을 법령으로 제한하고 있어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심의 일정이 촉박하고
- 이에 따라 최종정리추경이 지연됨으로 집행부의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의 모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정례회 일정을 조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안 제3조)
-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조정(제4조)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함경호)

- 가.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서 정례회의 회기가 35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제3조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 나. 제2차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소집됨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안 심의 및 행정사무감사가 심도있게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다음년도 예산안 심사와 원활한 행정사무감사활동을 위하여 11월 25일로 제2차 정례회 소집일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 다. 검토의견
- 조례안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심 사 결 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2
----------	-----

제출년월일 : 2006. 1. 4.

제 출 자 : 이만재의원외2인

## 1. 제 안 이 유

- 가. 지방의회에 대한 정례회의와 임시회 회기에 대한 규정인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이 2005년 1월 27일 법률 제7362호로 개정 삭제됨에 따라 연2회를 합하며 35일 이내로 제한된 정례회 회기 조항을 삭제하여 회기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함은 물론
- 나. 정례회가 매년 12월 1일 집회됨에 따라 예산의결일의 법적 제한으로 인해 심도있는 새해 예산심의를 위한 시간이 촉박하고
- 다. 정리추경의 지연으로 집행부의 예산운영에 차질을 빚는 등의 모순점이 도출됨에 따라 정례회 일정 조정을 통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서 회기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함.

## 2. 주 요 골 자

- 가. 제명 띄어쓰기 권장에 따른 제명 개정
- 나. 정례회의 회기를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제한하는 조항 삭제 (제3조)
- 다. 제2차 정례회를 매년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수정(제4조)

## 3. 참 고 사 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 나. 관계법령 : 별첨
- 다. 입법예고 : 해당없음
- 라.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마.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를 "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제2호중 "12월 1일"을 "11월 25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평창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u></p> <p>제3조(회기)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p> <p>제4조(집회) ----- -----.</p> <p>1. 생략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u>12월 1일</u>에 집회한다.</p>	<p><u>평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u></p> <p>제3조(회기) &lt;삭제&gt;</p> <p>제4조(집회) ----- -----.</p> <p>1. (현행과 같음) 2. ----- <u>11월25일</u>----- -----.</p>

#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법

第38條 (定例會) ①地方議會는 매년 2回 定例會를 개최한다.

②定例會의 集會日 기타 定例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地方自治團體의 條例로 정한다.

第41條 (開會·休會·閉會와 會議日數) ①地方議會의 開會·休會·閉會와 會期는 地方議會가 議決로 이를 정한다.

②삭제 <2005.1.27>

③年間 會議總日數는 定例會 및 臨時會를 合하여 市·道에 있어서는 120日, 市·郡 및 自治區에 있어서는 80日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4.3.16, 1999.8.31>